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10월 6일

국 무 총 리 한 성 숙

국 무 위 원
기 후 에 너 지 김 성 환
환 경 부 장 관

●대통령령 제367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조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광고한 자에게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